

순천시의회 공고 제2017 - 86호

「순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순 천 시 의 회 의



## 순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안이유

- 우리 시 여성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여성기업 확인 및 지원(안 제3조 ~ 제4조)
- 지원과 기회균등 보장, 자금지원 우대, 구매활동 촉진 등(안 제5조 ~ 제7조)
- 기술력향상 및 판로개척,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 작성(안 제8조 ~ 제9조)
- 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10조 ~ 제11조)
- 유공자 표창(안 제12조)

### 3. 입법예고 기간 : 2017. 10. 12. ~ 2017. 10. 16. (5일간)

####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0월 16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jw1028@korea.kr](mailto:pjw1028@korea.kr)

2) 주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3) 팩스 : 061-749-477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내용은 순천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순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순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성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라 함은 순천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라 함은 여성기업의 임원으로 당해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경제인단체”라 함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여성기업 확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의 고시에 따른다.

**제4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① 순천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성 친화적 업종에 해당하는 분야
2. 여성전문인력의 경제활동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분야
3. 신제품의 개발이나 신기술 도입 등 여성기업의 육성분야
4. 여성 고용창출을 위한 신산업 발굴 분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2. 휴업,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
3.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기업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제5조(지원과 기회균등 보장)**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구매활동·기술력 향상·판로개척 등의 모든 분야의 지원과 기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자금지원 우대)** 시장은 여성기업 자금 지원에 있어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자금지원 우대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구매활동 촉진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구매계획 대상 제품 중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구매목표 비율 제고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여성기업 우대

**제8조(기술력향상 및 판로개척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
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제9조(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 작성)**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를 작성하여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기본 자료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기업의 대표, 여성경제인단체가 시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에 의한 명부 등재를 요구할 경우, 시장은 관계서류 확인 후 명부에 등재할 수 있다.

**제10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구매활동·기술력 향상·판로개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업지원 업무 소관 국장,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관리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1. 여성경제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여성기업 대표

3. 경제 관련 단체 임직원

4. 그 밖에 관련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유공자 표창)**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 「순천시 포상 조례」 규정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